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. 4. 25 선고 2022가단125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

담당변호사 박은태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차범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3. 21.

판 결 선 고 2023. 4. 25.

주 문

1. 전남 해남군 C 대 367.0㎡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22. 8. 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. 8. 8. 접수 제178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차115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6. 9. 11. 'D은 원고에게 5,431,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. 10. 25.부터 2006. 9. 13.까지는 연 17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은 2006. 9. 28.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'이 사건 지급명령'이라 한다).

나. D은 2022. 8. 8. 전남 해남군 C 대 367.0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쳤다.

다. D은 심한 정도의 지체(하지기능)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,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서,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,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과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

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는바,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D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의 주장

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. 채무자인 D은 2022. 8. 8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. 5. 2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, 채무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의 존재를 알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. D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기초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,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며,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도 크지 않아 D이 피고에게 악의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이유가 없다. 또한 피고는 채무자 D의 채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, 선의의 수익자이다.

나.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이 법원의 E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, D은 2016. 2. 23. E위원회 개인채무조정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절차에 따라 2017. 1. 23.경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, D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6. 9. 28.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2016. 2. 23.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개인채무조정신청을 하고 2017. 1. 23.경까지 채무 일부를 변제한 점,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D은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채무자인 D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이라는 점을

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

한편,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,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,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,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조).

을 제3, 4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에 따르면,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22. 7. 1. 기준 평당 8,460원인 사실,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D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, 위 보증채무에 관하여 2017. 5. 29.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8503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,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,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의 보증채무자로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, ② D의 자녀인 피고는 D이 수급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, D의 수급자 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바, 별다른 재산이 없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경준